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【이명녀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 번호 1473 발의년월일: 2018. 8. 28.

발 의 자:이명녀, 문희성, 안영호,

김지근, 강혜경, 박채연, 박경흠, 노세영, 김기환.

신성봉. 권태호

1. 개정이유

○ 의장단 선출 후보자 등록제의 선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위원회 의안 상정시기를 조정하여 의안 심사준비 및 전문위원 검 토보고 등 준비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장단 선거 절차 정비(안 제11조)
- 나. 의안 등의 상정시기 조정(안 제59조)
 - 1) "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" 삭제
 - 2) 동의 및 승인에 관한 의안: 5일 → 7일
 - 3) 보고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보고서 및 계획서: 3일 → 5일

3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법 제71조(회의규칙)
- 4. 개정규칙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 : 해당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사 : 해당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분석대상 아님

라. 입법예고 : 2018. 8. 23. ~ 8. 27.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"를 "의장 입후보자로 등록신 청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결선투표 없이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제6항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고 의장선출 절차를 진행한다.

제11조제6항 중 "의원은 해당 선거일전 3일"을 "의원(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)은 해당 선거일 3일전"으로 한다.

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기간(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)"을 "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"5일"을 "7일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"3일"을 "5일"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선거)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<u>피선거권이 있는 전체</u> 의원을 대상 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,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 표하고 그 결과 제1항의 득표자가	제11조(선거) ① <u>의장</u> 입후보자로 등록신청한
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결 선투표을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 선자로 한다. 〈단서 신설〉	다만,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결선투표 없이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 여 제6항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신청 을 받고 의장선출 절차를 진행한다.
1. ~ 2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 ⑥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전 3일까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. ⑦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⑥
제59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 ① 위원회는 의안이 회부(재회부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<u>기간(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</u>)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	제59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 ①

현 행	개 정 안
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	
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결을 거	
쳐 상정할 경우는 제외한다.	 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다음	2
각 목의 안건	
가. 동의 또는 승인에 관한 의안:	가
<u>5일</u>	<u>7일</u>
나. 보고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	나
보서 및 계획서: <u>3일</u>	<u>5일</u>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